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2년 8월 30일(화)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8.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15호)

나. 회부일자: 2022. 8. 18.

다. 상정일자: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8. 30. 상정·의결 (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형석)

#### 가. 제안이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단체협약에 따라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공무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안 제4조)
- 2)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 및 정원, 채용 등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10조)
- 3) 신분 및 사회보험의 가입, 복무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23조)
- 4)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와 표창, 징계,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안 제3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무원이란 「인사혁신처 공무원 등 운영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 **5. 토론요지: 「없음」**

###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고용안전→고용안정」 (단순오타 수정)**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2년 8월 26일(금)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8. 1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9호)
- 나. 회부일자: 2022. 8. 18.
- 다. 상정일자: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8. 26. 상정·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 가. 제안이유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관내 노후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신·증·개축 등) 재원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 확보하여 향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
- 2) ‘길음 청년 창업센터 건립’ 관련 물가상승에 따른 자재비 인상 및 설계비·철거공사비를 증액하여 안정적인 공공시설 건립 추진

### 나. 주요내용

#### 1) 기금설치 개요

- 가)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3조
- 나) 설치목적 :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 다) 설치연도 : 1995. 3. 6.(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로 통합제정 2006. 5. 30. 조례 제655호)

##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가) 기금사업의 목표

- 구, 동, 보건소, 구의회 청사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신·증·개축, 재건축, 이전·신축 포함)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기본조사 설계, 실시 설계,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부대경비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원

### 나)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

- 돈암1동 주민센터 건립(임시청사, 설계 및 공사) : 3,515,128천원
- 길음2동 주민센터 건립(설계 및 공사) : 2,287,000천원
- 정릉2동 주민센터 건립(타당성 조사) : 50,000천원
- 길음 청년 창업센터 건립(설계 및 공사) : 300,000천원

### 다) 2022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

#### (1) 기금변경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변경예산	증감액
기금규모(수입·지출)	75,879,035	91,225,795	15,346,760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변경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75,879,035	91,225,795	(증) 15,346,760	
예치금회수	66,090,659	66,275,795	(증) 185,136	2021년 결산 반영
기타회계 전입금	8,800,000	23,800,000	(증) 15,000,000	제2회 추경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증가
이자수입	988,376	1,150,000	(증) 161,624	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예상분

○ 지출계획변경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75,879,035	91,225,795	(증) 15,346,760	
사무관리비	70,840	70,840	-	-
시설비	5,966,000	6,178,524	(증) 212,524	길음 청년 창업센터 설계비·철거공사비 증액
자산취득비	16,128	16,128	-	-
기타자본이전	100,000	100,000	-	-
예치금	69,726,067	84,860,303	(증) 15,134,236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및 이자수입 증가

(3) 2022년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조 성 액	-	사 용 액	=	2022년말 조성액(잔액)
91,225,795		6,365,492		84,860,303

2) 참고사항

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A-B)
	계(A)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B)	비용자성 사업비	
2016년 까지	116,034,828	107,582,166	7,543,001	909,661	114,762,902	114,762,902	1,271,926
2017년	1,322,596	1,274,142	48,454		420	420	1,322,176
2018년	1,715,189	1,641,317	73,872		420	420	1,714,769
2019년	7,430,823	7,308,498	122,325		560	560	7,430,263
2020년	25,831,403	25,500,000	331,403		840	840	25,830,563
2021년	32,370,742	31,770,742	600,000		3,849,780	3,849,780	28,520,962
2022년	9,788,376	8,800,000	988,376		6,152,968	6,152,968	3,635,408
계	194,493,957	183,876,865	9,707,431	909,661	124,767,890	124,767,890	69,726,067

나) 2021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결산내역

(1) 2021년 기금조성 내역 (2021.12.31.기준)

(단위 : 원)

2020년도말 조성액 ㉠	2021년 증감액			2021년도말 조성액 ㉡ = ㉠ + ㉢
	계 ㉢ = ㉣ - ㉤	조성액(수입) ㉣	사용액(지출) ㉤	
37,569,697,480	30,214,692,732	32,285,650,732	2,070,958,000	67,784,390,212 *(1,508,595,000)

\* (사고이월 / 일자리경제과) 길음 청년 창업센터 부지매입비를 포함

수 입		지 출	
계	69,855,348,212	계	2,070,958,000
일반회계전입금	31,770,742,000	기본경비	840,000
예치금회수	37,569,697,480	정릉2동 국유지 매입	192,660,000
이자수입	514,908,732	창업센터 부지 매입	1,877,458,000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증액분을 반영하고, 성북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보고서

2022년 8월 26일(금)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8. 1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10호)

나. 회부일자: 2022. 8. 18.

다. 상정일자: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8. 26. 상정·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 가. 제안이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 확보하여 향후 세입 감소,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악화 등 우리구 재정운영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 대비

#### 나. 주요내용

##### 1) 기금설치 개요

가)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9조

나) 설치목적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다) 설치연도 : 2020. 12. 31.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가) 기금사업의 목표

-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지원
- 세입 감소에 따른 부족한 재원의 충당
-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나)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타회계 전출금(일반회계 전출) : 5,100,000천원

다) 2022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

(1) 기금변경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변경예산	증감액
기금규모(수입·지출)	10,334,615	30,400,000	20,065,385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변경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10,334,615	30,400,000	(증)20,065,385	
기타회계 전입금	10,200,000	30,200,000	(증)20,000,000	제2회 추경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증가
이자수입	134,615	200,000	(증)65,385	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예상분

○ 지출계획변경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10,334,615	30,400,000	(증)20,065,385	
사무관리비	630	630	-	-
예치금	5,233,985	25,299,370	(증)20,065,385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및 이자수입 증가
기타회계 전출금	5,100,000	5,100,000	-	-

(3) 2022년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조성액	-	사용액	=	2022년말 조성액(잔액)
30,400,000		5,100,630		25,299,370

다. 참고사항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A-B)
	계(A)	전입금	이자수입	계(B)	비용자성사업비	기타지출	
2022년	10,334,615	10,200,000	134,615	5,100,630	630	5,100,000	5,233,985
계	10,334,615	10,200,000	134,615	5,100,630	630	5,100,000	5,233,98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증액분을 반영하고,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2년 8월 29일(월)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8. 1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11호)

나. 회부일자: 2022. 8. 18.

다. 상정일자: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8. 29. 상정·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 가.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2.4.20.)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판매대행점’ 이 상품권의 발행·판매, 충전·환전, 가맹점 관리 및 상품권 운영 시스템 관리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 2) 서울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성북구 계좌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3)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 4) 가맹점 등록 신청 처리 기한 설정함(안 제5조제3항).
- 5)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 6) 가맹점 등록취소 강행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5항).
- 7)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으로 함(안 제8조제4항).
- 8) 판매대행점의 위탁사업에 따른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5항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9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와 함께 크게 증가한 상품권 운영자금의안정적 관리와 운영 과정상 도출되었던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상위 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2년 8월 29일(월)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8. 1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12호)

나. 회부일자: 2022. 8. 18.

다. 상정일자: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8. 29. 상정·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 가. 제안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11.19. 시행)에 따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포괄적으로 규정 (안 제1조, 제2조, 제5~7조 수정)
  - 다양한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특정 상황’, ‘대면업무’, ‘구체적인 업종’,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종사자’ 등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

- 2) 지원계획의 수립 등 내용 정비 (안 제7조제2항 수정, 제7조제3항 삭제)
  -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과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가 지정되는 것을 고려, 지원계획은 재난 발생 시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변경
- 3) 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변경 (부칙 제2조)
  - 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위원회를 대행하는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 으로 개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5. 18.) 시행(21. 11. 19.)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상위 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보고서

2022년 8월 29일(월)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8. 1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13호)

나. 회부일자 : 2022. 8. 18.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8. 29.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 가. 제안이유

2021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2년 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

○ 설치목적 : 중소기업육성발전 지원

○ 설치연도 : 1993년

#####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업·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

가) 사업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리 융자 지원

나) 지원대상 : 성북구에서 경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다) 지원기준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 1.2%,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한도 : 담보-업체당 1억원 이내, 신용-업체당 5천만원 이내

4) 2022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

가) 기금변경 사유

○ 2021년도 정산에 따른 사업비잔액(2021년도말 조성액)으로 예치금 증가

나) 2022년도 기금변경 내역

○ 2021년도 기금 정산 내역 (단위: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가)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	조성액(㉠)	사용액(㉡)	
3,553,507	430,394	3,855,554	3,425,160	3,983,901

○ 2022년도 기금변경 총괄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	변경예산	증
기금 총 운용액	3,407,722	5,279,827	1,872,105

- 2022년 기정예산 3,407,722천원에서 5,279,827천원으로 증액 편성

· 당초 예치금 316,972천원에서 2,189,077천원으로 증액 편성

다)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변경

(단위: 천원)

항 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3,407,722	5,279,827	(증) 1,872,105	
일반회계전입금	0	0	-	
공공예금이자수입	11,483	11,483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284,443	1,284,443	-	
예치금회수	2,111,796	3,983,901	(증) 1,872,105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

○ 지출계획 변경

(단위: 천원)

사업명-편성목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3,407,722	5,279,827	(증) 1,872,105	
출 연 금	750,000	750,000	-	
이차보전금 (이자차액보전금)	338,000	338,000	-	
일반운영비	2,750	2,750	-	
민간융자금	2,000,000	2,000,000	-	
예 치 금	316,972	2,189,077	(증) 1,872,105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라) 2022년도 기금 조성(안)

(단위:천원)

조 성 액	사 용 액	2022년말 조성액 (잔 액)
<b>5,279,827</b>	<b>3,090,750</b>	<b>2,189,077</b>
· 이 자 수 입 : 11,483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1,284,443 · 예 치 금 회 수 : 3,983,901	- · 출 연 금 : 750,000 · 이 차 보 전 : 338,000 · 민 간 융 자 금 : 2,000,000 · 일 반 운 영 비 : 2,750	= · 2023년도로 이월(예치금)

### **3. 조례안 검토 결과**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로,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2년 9월 7일(수)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8. 1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14호)

나. 회부일자: 2022. 8. 18.

다. 상정일자: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8. 30. 상정·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형석)

#### 가. 제안 이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임신공무원 보호, 감염병 발생에 따른 공가 규정 정비, 난임치료시술 휴가 확대,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임신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야간근무 제한 시간 확대(안 제15조)
- 2)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가 사유 신설(안 제23조)
  -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3)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5일→10일)
- 4)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안 제2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